

2019년 소방공무원법 정오표(19.8.9)

페이지(p)	오(수정 전)	정(수정 후)
p 28 도표 고충심사위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
p 60 (5) 신체조건표 시력 p 98 5) ㉔	0.3 이상	0.3 이상이거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
p 75 별표6 p 531	0.5할 추가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잠수기능장
	0.1할	제1종특수트레이더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p 78 별표2 소방정·항공 분야 소방경 이하 추가		잠수기능장,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p 78 별표2 소방정·항공 분야 소방교 이하 추가		잠수산업기사
p 86 (2) p 100 시험위원 임명 2) p 126 57번 문제 해설 p 539 시행규칙 제27조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3인 내지 5인으로 하고,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되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위원은 각각 3명 이상으로 하되
p 86 실전연습 G.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별 3인 내지 5인으로 하고 실기시험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위원은 각각 3명 이상으로 한다.
p 88 (1)㉑ ㉒아래 추가		㉒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시험만 해당한다) 1통
p 88 (1)㉒	다만,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만,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p 88 (1)㉒㉓ 대체 및 ㉔ 추가		㉓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p 89 ㉕ 행정정보확인사항	다만,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만,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p 89 ㉕ 대체 및 ㉖ 추가		㉖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㉗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p 154 (2)㉗ p 554 4)㉘	최근 3년간(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	최근 3년간(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
p 164 인사기록의 관리 2)	(소방장 이하는 2년간)	(소방위 이하는 2년간)
p 218 (3)㉙㉚ p 213 3)㉛ p 258 64번 해설	0.5점	1.0점
p 291 실전연습 M	2년간	3년간
p 291 실전연습 해설	후보자는, 최근 3년간	후보자의 경우에도, 최근 2년간
p 330 65번 B 및 해설	최근 2년간(소방경은 3년간) 최근 2년간(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후보자는 3년간)	최근 2년간 최근 2년간
p 331 66번 B	최근 3년간	최근 2년간
p 332 70번 A	최근 2년간(소방경은 3년)	최근 2년간

p 346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아래 본문 내용 수정 참고
p 376 ㉔	회의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p 379 실전연습 해설	방화복이 아니라 방한파카	방화파카가 아니라 방한파카
p 392 근무시간 및 휴가	① 연가 : 재직기간별 3일에서	① 연가 : 재직기간별 11일에서
p 408 6번 문제 B	15일	14일
P 408 6번 문제 해설	14일	15일 도표부분은 아래 본문 내용 수정 참고
p 425 58번 문제 및 해설	고충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p 425 58번, 59번 G p 426 60번 G	회의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p 456 p 457도표 성희롱	강등·감봉	강등·정직
P 458 실전연습		아래 본문 내용 수정 참고
P 462 (5) ① ㉔	큰 피해가	큰 피해를
P 463 (1) ②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개정 19.3.12.)
p 464 ㉔ 징계등 의결서 대체(개정, 19.8.6)		㉔ 징계등 의결서 : 의결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징계령 제14조 제2항, 개정 19.8.6.) 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㉔ 증거의 판단 ㉔ 관계 법령 ㉔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p 467 (5) 아래 추가		아래 본문 내용 수정 참고(개정 19.3.12.)
p 506 68번 문제	징계등 의결서에	의결서 이유란에
p 506 68번 A,B,G,M 대체 (개정, 19.8.6)		A.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B. 증거의 판단 G. 관계 법령 M. 의결방법
p 506 68번 해설 대체		M 틀림,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징계령 제14조 제2항, 개정 19.8.6.) 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㉔ 증거의 판단 ㉔ 관계 법령 ㉔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p 534 별표2 소방정·항공분야 추가	잠수기능사,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p 538 2)㉔ 3. 대체 및 5. 추가		3.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p 538 2)㉔ 3. 대체 및		3.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4. 추가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p 566 2)② 2.	2.0점	1.0점
p 594 6)② 대체 (개정, 19.8.6)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개정 2019. 8. 6.> 1.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2. 증거의 판단 3. 관계 법령 4.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19. 1. 24] [행정안전부령 제97호, 2019. 1. 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승진·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되어 변경 후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인사기록 등을 송부하는 경우, 종전에는 최근 3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와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평정표의 부분을 송부하되,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와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평정표 부분을 송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위·지방소방위의 경우에도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 부분 및 경력·교육훈련성적·가점 평정표 부분을 송부하도록 하고, 소방정·항공 분야 경력경쟁채용의 응시자격 기준에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를 추가하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중 시력의 합격기준에 교정 시력 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97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소방공무원의 승진·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인사기록관리자는 변경 후 인사기록관리자에게 5일 이내에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최근 3년간(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 부분 및 경력·교육훈련성적·가점 평정표 부분을 송부해야 한다.

제27조 중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3인 내지 5인으로 하고,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위원은 3인 이상"을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위원은 각각 3명 이상"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만 해당한다) 1통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정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별표 2 중 소방정·항공 분야란 및 자동차 운전분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정·항공 분야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 ~ 6급 항해사·기관사, 1급 ~ 4급 운항사, 소형선박 조종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자동차 운전분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비고 : 채용계급

1. 의사: 소방령·지방소방령 미하
2. 기술사, 기능장, 1급 ~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소방경·지방소방경 미하
3. 기사, 5급 및 6급 항해사·기관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장·지방소방장 미하
4.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소방사·지방소방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격 외의 자격: 소방교·지방소방교 미하

별표 5의 시력의 합격기준란 중 "0.3 이상"을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가점비율 분야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자격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 자격 중 기술사·기 능장 2. 1급 ~ 4급 항해사 ·기관사·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 업용 조종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 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 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 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 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 기능사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 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사무 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비고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2. 자격증(면허증) 및 사무관리 분야를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기본서 본문 내용 수정

p 60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p 75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24조 관련 별표6)

가점비율 분야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자격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2. 1급~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교통관리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 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 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비교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② 자격증(면허증) 및 사무관리 분야를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p 86

(2) 시험위원의 수(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 **【15년 서울 소방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위원은 각각 3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명단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실전연습

- Q. 다음 시험위원의 임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A.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B.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G.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위원은 각각 3명 이상으로 한다.**
 - M.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명단은 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명단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p 78

③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자격 구분표(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관련 별표2 정리)

임용예정분야	임용계급			
	(지방)소방령 이하	(지방)소방경 이하	(지방)소방장 이하	(지방)소방교 이하
소방분야		기술사·기능장 (소방기술사)	기사·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시설관리사)	기타 자격증 (소방설비산업기사 - 기계분야)
구급분야	의사			응급구조사1급, 2급 간호사
화학분야 기계분야 건축분야 전기·전자분야 정보통신분야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 중 화학, 기계 등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기능장	해당 직무분야의 기사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기능사 (안전관리분야에서 소방분야 응시자격 제외)
소방정·항공 분야		1급~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잠수기능장 , 사업용 조종사·운송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항공정비사·운항관리사	5급~6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자동차 정비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국가기술 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자동차 중 직무분야 기술사·기능장	해당 직무분야의 기사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 운전분야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특수면허 ※ 소방사·지방소방사에 한한다.

p 88 03. 응시 서류의 제출

(1)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① 제출서류 :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 ㉠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 ㉢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통
 -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만 해당한다) 1통
- ② 행정정보 확인사항 : 필기시험 합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시행 2019.1.24).
- ㉠ 가족관계증명서
 -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② 행정정보 확인사항 :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한한다)
 -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P 105

46.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별 3인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위원은 3인 내지 5인으로 한다.[]

P 154

(2) 인사기록의 이관(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 ① 소방공무원이 승진·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전 소속 인사기록관리자는 신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5일 이내 인사기록과 최근 3년 간(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의 경우에는 2년 간)의 근무성적평정표와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평정표의 부분을 송부하여야 한다.

① 연가일수 :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18.)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5년 이상 5년 미만	2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6년 이상	21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②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18. 12.18, 2019.4.16.)

- ㉠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 ㉡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부상 또는 질병(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한 휴직

6번 문제 수정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A.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B. 3년 이상 4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14일 이다.
- G.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M.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해설 3년 이상 4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15일이다.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5년 이상 5년 미만	2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6년 이상	21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실전연습

Q. 다음 중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A. 친절·공정의 의무위반과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양정의 기준은 파면 또는 해임이다.
- B. 품위유지의무 위반(성매매)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양정의 기준은 파면이다.
- G. 직무태만과 회계질서 문란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양정의 기준은 파면이다.
- M.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징계양정의 기준은 강등·정직이다.

▶ 해설 비위가 중하고 고의가 있을 때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성희롱의 징계양정의 기준은 파면이지만 성매매는 파면 또는 해임이다. 답 ㉞

(5) 아래 추가

(6) 감사원에 대한 통보(소방공무원 징계령 제 13조 제6항 및 제7항, 개정 19.3.12.)

- ①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3. 12.>
- ② 감사원은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 3. 12.>

소방공무원법승진임용규정 개정 [2019. 6. 25, 개정, 시행 2019. 7. 1]

※ 제41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신설

제41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 ①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 ②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p 285 3. (2) 아래 추가

(3)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 ① **명예퇴직 공로자 특별승진의 제한** : 명예퇴직 공로자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시행 19.7.1)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 ② **특별승진의 취소** : 명예퇴직 공로자로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규정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고충처리규정[시행 2019. 4. 17] [2019. 4.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 내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며,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는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5857호,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등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하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충 해소를 위해 고충상담의 처리 및 임용권자 등에 대한 인사혁신처장의 고충처리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충처리대상 및 처리 절차의 명확화(제2조, 제2조의2 신설)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나 성폭력범죄·성희롱 및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고, 고충처리는 고충상담, 고충심사 및 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 처리로 구분함.

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사안 구체화(제3조의6제5항 신설)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으로서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이나 직무권한의 부당한 행사로 인한 고충 등의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

다.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한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의 의무(제14조 신설)

임용권자 등은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상담 창구 마련, 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 방지를 위한 조치, 고충실태 조사 및 현황 보고 등을 하도록 함.

라. 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 및 조사 절차(제15조 신설)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범죄·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임용권자 등에게 조사 실시를 요청하거나 직접 조사하도록 함.

마.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제3조의7제2항(고충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에 따라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위원의 수를 조정할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에 따르는 추가 교재 수정

p 373 (2) 대체 및 (3) 추가

(2) 고충심사의 대상

-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의 고충을 예방하고 고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고충처리의 구분

① 고충처리는 고충상담, 고충심사 및 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 처리로 구분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와 인사혁신처장은 고충상담이나 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고충상담 : 고충을 제기한 사람(청구인)의 동의

㉡ 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 : 피해자의 동의

③ 임용권자등은 상·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언행, 신체적 접촉 또는 위법·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한 고충에 대하여 심사가 청구된 경우로서 고충의 신속한 조사 및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심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은 임용권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의 이행 및 그 결과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

㉠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 가해자 등 책임자에 대한 조치

㉢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p 373 (1) ㉡아래 ㉢ 추가

③ 기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사안

㉠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

㉢ 그 밖에 성별·종교·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고충

p 374 ㉡㉢ 아래 추가

㉣ **고충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 설치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수, 조직 규모 및 관할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p 375 (1) ㉡ 대체

② 고충심사의 대상 :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와 성폭력범죄·성희롱 및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의 고충을 예방하고 고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청 훈령) 개정(시행 19.6.25)

1. 중점관리대상 비위행위 신설에 따른 징계양정기준 신설

p 457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징계양정의 기준, 2019.6.25.>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제2호(공금 횡령·배임·유용)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부작위·직무태만, 회계질서문란 라. 소극행정 마.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 고발 의무 불이행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사. 부정청탁 아. 상여금 부정 수급 자. 공무원행동강령 13조의3부당행위 차. 부당한 행위에 무대응, 은폐 카. 기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가.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수·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마.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4와 같음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 제1호아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7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2.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상향 조정

p 458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 음주운전 징계기준: 전면 개정>

음주운전 유형		징계요구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	경·중징계	정직 - 감봉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측정거부)		강등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인적 피해 후 도주	파면 - 해임
물적 피해 후 도주			해임 - 정직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분야로 채용되어 필수보직기간 중 소방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3. 담당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1) 행위자를 담당자로 개정하고 담당자가 10조의2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의 경우 담당자를 문책기준에서 제외

p 459 별표 2(담당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의 기준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중요한 정책결정(고도의 정책)사항		3	2	1
일반적인 정책결정사항	3	1	2	4
중요한 단순반복업무	1	2	3	4
경미한 단순반복업무	1	2	3	
단독행위	1	2		

※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 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의미함.

4. 중점관리 대상 비위 추가

p 461 (4) ② 아래

- ㉠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에 따른 부당한 행위
- ㉡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 ㉢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

5. 적극행정 면책요건 신설(제10조의2)

p 462 (5) 대체

(5)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

- ① 징계면제 :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 ㉠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거나 현장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 ㉢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 감사원 등의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 :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위의 징계면책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징계면제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징계위원회는 중점관리대상 비위가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공무원 징계령[시행 2019. 8. 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징계 등 심의 대상자가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의견서에 징계 등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의 의결을 할 경우에 징계 등의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심의하여 의결서에 명시하도록 하며,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제1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신설

징계위원회는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피해자의 진술로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4조제2항(징계등 의결서) 기재사항 개정

"그 의결서"를 "의결서의 이유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 2) 증거의 판단
- 3) 관계 법령
- 4)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